자 보기 및 주건환경에 조례 일부 (1853년) 에 대한 **제 안 설 명**

- □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노원구 제1선거구 출신 신동원 의원입니다.
- □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118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 본 조례 일부개정안의 제안 이유는
 서울시에는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비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려는 지역이 많은 상황이며, 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고 복합적인 현안이 많아 고도의전문지식과 기술이 있는 자문역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이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정책추진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공익성을 강화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 □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비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다양한 전문가를 구성하여 중요 정책의 입안· 결정 등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비사업정책자 문위원회의 신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안을 참조해 주 시기 바랍니다.
- □ 존경하는 주택공간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정비사업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한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헤아려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